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0076

발의연월일 : 2025. 4. 23.

발 의 자 : 정희용·김상욱·박덕흠 서천호·김선교·정동만 조지연·박수민·윤재옥 박준태·조경태·이양수 의원(12인)

주 문

서해는 한·중 간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을 통해 서해에서의 어업활동을 규율하고 있으며, 중국은 최종 경계획정을 하기 전까지 일방적인 행위를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한민국과 사전 협의 없이 양식시설 2기(선란1호, 선란2호)와 양식 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이를 향후 한·중 간 어업 질서와 해양 안전을 위협할 행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대한민국과

협의 없이 양식시설 등의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구조물이 대한민국의 해양 관할권과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고,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재발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중국의 무단 시설물 설치 행위를 방치할 경우, 향후 추가적인 해양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우리 어업인의 조업권 침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어업 질서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감시할 정기적인 해양 조사를 강화하고, '동일 비례원칙'에 입각한 양식시설 등의 구조물 비례조치, 전담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용 등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억지·상쇄시킬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부 부처 간 긴밀한 공조와 공론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중국의 일방적 행위는 한·중 간 어업 질서를 해치고, 우리 어민들의 조업권과 해양 자원 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우리 어업인의 권익 보장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하며, 한·중 간 어업 협력 질

서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본 사안을 초당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해양 권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고, 한·중 간 어업 협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해당 수역은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지역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시설 설치는 한국 어민들의 조업권을 침해하고 해양 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한·중 어업 질서를 회복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